

Muan Web Contents

2025년 02월 11일 07시 09분



목차

목차	2
설립목적	3
승달장학회 설립목적	3
정관	3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명칭)	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3
제4조(사업)	3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3
제2장 재산과 회계	4
제6조(재산의 구분)	4
제7조(재산의 관리)	4
제8조(재산의 평가)	4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4
제10조(회계의 구분)	4
제11조(회계원칙)	4
제12조(회계연도)	4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5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5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5
제3장 임 원	5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5
제17조(상임이사 및 고문)	5
제18조(임원의 임기)	5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5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6
제21조(이사회)	6
제21조의 2(이사장 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6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6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6
제24조(감사의 직무)	6
제4장 이 사 회	7
제25조(이사회의 기능)	7
제26조(의결정족수)	7
제27조(의결 제척사유)	7
제28조(회기)	7
제29조(이사회의 소집)	7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7
제31조(서면결의 금지)	8
제5장 보 칙	8
제32조(정관의 변경)	8
제33조(해산)	8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8
제35조(시행세칙)	8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8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8
제38조(모금액 및 실적 공개)	9
부 칙	9



승달장학회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교사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연구활동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무안군 교육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교사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연구활동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무안군 교육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무안군승달장학회」라 한다(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의 지급사업
- 2. 기타 목적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3. 우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
- 4. 지역 교육발전시책 지원사업
- 5. 외국어 능력향상 지원사업
- 6. 지역 거점 고등학교육성 지원사업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 2.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무안군 관내 1년이상 거주 주민의 자녀와 무안군 관내 우수 학교 및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하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원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회계 잉여금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영치하여야 한다.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치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3인 이내
- 2. 감사 2인

제1항 1호의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항 1호의 이사 중 무안군수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항 2호의 감사는 주무과장을 포함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및 고문)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의 상임이사를 둘수 있다.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회의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건의할수 있는 고문을 둘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www.muang.go.kr>)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사의 선출은 연임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부이사장을 둔다.

제21조의 2(이사장 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무안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무안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사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대행하되, 부이사장 부재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서삼석	무안읍	재임기간
이사	서광종	일로읍	4년 ('06.2.26 ~ ' 10.2.26)
이사	김동섭	삼향면	"
이사	박춘상	몽탄면	"
이사	홍영산	청계면	"
이사	김영열	현경면	"
이사	김수석	망운면	"
이사	김광수	해제면	"
감사	박일상	무안읍	2년 ('08.2.27 ~ ' 10.2.26)

참 ㅁ	자치행정과장	후인승	재업기간
------	--------	-----	------

제38조(모금액 및 실적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ㅁ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제3항제2호 별지목록2를 1996. 3. 15개정
- 제16조제1항1호 개정 및 제2항, 제3항을 1998. 2. 27신설
- 제5조제2항 및 별지2를 1999. 8. 4개정
- 제20조제3항 신설 및 별지2를 2002. 3. 12개정
- 제16조제4항, 제5항 신설 및 별지2를 2003. 3. 11개정
-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개정 및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 정관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신설,
- 제21조의2, 제25조를 2012. 10. 25개정 별지2를 (2009.4.10개정),
- (2009.10.30개정), (2010.11.1개정), (2011.5.30개정), (2011.11.2개정),
- 제1조 및 제3조 개정, 제4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 제5조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제16조 제1항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 개정, 제17조 제3항 신설, 제21조 신설, 제21조2 개정, 제25조 제7항 신설, 2012.9.18 개정,
- 별지 2를 2013. 2. 27 개정
- 별지 2를 2013. 10. 1 개정
- 별지 2를 2014. 2. 26 개정
- 별지 2를 2015. 1. 27 개정
- 별지 2를 2015. 4. 7 개정
- 별지 2를 2015. 10.14 개정
- 별지 2를 2016. 4. 6 개정
- 별지 2를 2016. 9. 28 개정
- 별지 2를 2016. 12. 9 개정
- 제5조 제3항, 제25조 제7항 삭제, 별지 2을 2017. 3. 31 개정
- 별지 2를 2018. 3. 22 개정
- 별지 2를 2018. 4. 25 개정
- 별지 2를 2019. 12. 13 개정
- 제16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2항을 2020. 4. 7 개정
- 제38조를 2020. 11. 12. 신설

MUAN

Web Contents

 무안군